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033
----------	------

2017년 9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I .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17. 8. 14.
2. 제 안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회부일자 : 2017. 8. 16.
4. 상 정 : 서울특별시의회 제276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2017. 9. 4.)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계수조정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2017. 9. 5.)
 -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 요지 (기획조정실장 정병익)

1. 제안이유

- 학교 교육환경 개선 및 주요 교육시책사업 등 필요사업을 반영하고 용도가 지정된 성립 전 사용분을 계상하기 위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규모는 총 9조 4,409억원으로 기정예산(8조 7,842억원) 보다 6,567억원 증가함
- 세입예산의 증감내역
 - 증가된 세입예산은 6,567억원으로
 - 일반 재원 6,294억원
 - 목적지정 재원 273억원임
 - 일반 재원 6,294억원,
 - 보통교부금 1,743억원,
 - 법정전입금 5,558억원,
 - 농협기탁금 5,000만원 및
 - 지방교육채 △1,334억원 감액 반영함

- 목적지정 재원 1,440억원은
특별교부금 198억원,
국고보조금 14억원,
광역자치단체전입금 24억원,
기초자치단체전입금 31억원 및
기타이전수입 5억원 등의 우선확정분을 반영함

○ 세출예산의 증감내역

- 일반 재원 세출 증감내역은
교육공무직원 맞춤형복지비 15억원 증액,
컴퓨터교실 노후PC교체비 57억원 증액,
중학교 협력종합예술활동 연습실 시설비 22억원 증액,
어린이활동공간 시설개선비 15억원 증액,
저소득층자녀학비, 교과서지원 등 5개 사업은 △77억원 감액,
시설사업비는 2,006억원 증액,
지방교육채 원리금상환 4,245억원 증액 등임
- 목적지정 재원 세출 증감내역은
영어회화전문강사배치, 행복교육박람회 등
55건의 목적지정사업에 지정된 목적대로 273억원 편성함

○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 교육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270억원(1.5%) 증가한
1조 8,697억원으로
교육사업비의 67.1%를 차지하는 교육복지사업비는
지원 대상 및 단가 감소분을 반영한

방과후등교육지원비와 교과서지원비의 감액으로
 기정예산 대비 △19억원이 감소한
 1조 2,540억원임

- 시설사업비는

일반시설비 1,861억원 및 급식시설비 143억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036억원(38.9%) 증가한
 7,272억원을 편성함

3. 예산안 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편성액		기정예산액 (B)	증감내역	
		금액(A)	비율		증감액(A-B)	비율(%)
총 규 모		9,440,868	100.0%	8,784,129	656,739	7.5%
세 입	중앙정부이전수입	5,206,398	55.1%	5,010,829	195,569	3.9%
	자치단체이전수입	3,551,834	37.6%	2,957,767	594,067	20.1%
	기타이전수입	15,033	0.2%	14,490	543	3.8%
	자체수입	162,161	1.7%	162,161	0	0.00%
	지방교육채	-	0.0%	133,440	△133,440	△100%
	전년도이월금	505,442	5.4%	505,442	0	0.0%
세 출	인건비	5,365,739	56.8%	5,365,719	20	0.0%
	기관운영비	40,877	0.4%	40,829	48	0.1%
	학교운영비	746,114	7.9%	744,634	1,480	0.2%
	교육사업비	1,869,663	19.8%	1,842,712	26,951	1.5%
	시설사업비	727,172	7.7%	523,569	203,603	38.9%
	지방교육채및BTL	683,574	7.3%	258,937	424,637	164.0%
	예비비및기타	7,729	0.1%	7,729	0	0.0%

Ⅲ. 검토보고 (전문위원 엄지운)

1.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경위 및 편성요건

-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017년 8월 14일 제출한 것으로 소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 지방자치단체의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30조1) 및 「지방재정법」 제45조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회계연도의 재정여건과 관련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편성할 수 있음

-
- 1)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2)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2.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개요

-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8조 7,841억 2,900만원 대비 7.5%, 6,567억 3,900만원을 증액한 9조 4,408억 6,800만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임

〈표 2-1〉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규모

(단위 : 백만원, %)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C=A-B)	증 감 액		증감률
			증 액	감 액	
9,440,868	8,784,129	656,739	659,503	△2,764	7.5

※ 증액 및 감액은 세출예산 기준

- **세입예산**의 경우, 일반재원 6,294억 4,600만원(세입재원의 95.8%)과 목적지정지원금(우선확정) 272억 9,300만원(4.2%)을 합한 6,567억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표 2-2〉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재원

(단위 : 백만원, %)

합 계	일반재원					목적지정지원금(우선확정)			
	이전수입	자체수입	지 방 교육채	순세계 잉여금		중앙정부 이전수입	자치단체 이전수입	기 타 이전수입	
656,739	629,446	762,886	0	△133,440	0	27,293	21,254	5,546	493

- **일반재원**은 6,294억 4,600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한 바, ① 보통교부금, 법정전입금, 기타이전수입 증액에 따른 이전수입 7,628억 8,6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하고, ② 지방교육채 △1,334억 4,000만원 감액편성 요청한 것임

- **목적지정지원금(우선확정)**은 「지방재정법」 제45조3) 및 예산총칙 제9조4)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회계연도 중 그 용도가 지정·교부된 지원금으로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을 위해 우선확정5)한 것으로 272억 9,3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표 2-3〉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 경 예산안 (A)	기 정 예산 (B)	증 감 내 역			
			증감액 (C=A-B)	증감률 (C/B)	일반재원	목적지정 지원금 (우선확정)
합 계	9,440,868	8,784,129	656,739	7.5	629,446	27,293
이 전 수 입	8,773,265	7,983,086	790,179	9.9	762,886	27,293
중 앙 정 부 이 전 수 입	5,206,398	5,010,829	195,569	3.9	174,315	21,254
자 치 단 체 이 전 수 입	3,551,834	2,957,767	594,067	20.1	588,521	5,546
기 타 이 전 수 입	15,033	14,490	543	3.7	50	493
자 체 수 입	162,161	162,161	0	0.0	0	0
지 방 교 육 채	0	133,440	△133,440	△100.0	△133,440	0
전 년 도 금	505,442	505,442	0	0.0	0	0

- 3)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 4)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서 예산총칙」 제9조 회계연도 중에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되는 교부금, 보조금, 전입금 등 목적지정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회계연도내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지정지원금이 교부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
- 5) 제1회 추경(2017.05.24.) 후 2017.07.31. 우선확정분까지 반영

- **세출예산**은 44개 세부사업에 대해 증·감 조정하여 기정예산(8조 7,841억 2,900만원) 보다 6,567억 3,900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한 것으로
 - **인건비**는 행정기관 소속 계약제직원에 대한 맞춤형 복지비로 2,000만원을 증액하고
 - **경상비**는 평생교육기관 문화교실 강사료 및 학교 소속 직원 맞춤형 복지비로 15억 2,800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하였음
 - **교육사업비**의 경우, 269억 5,100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한 것으로 교과서지원(△32억 6,300만원) 및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24억 2,200만원) 등을 포함한 5개 사업내역에 대하여 △76억 1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학교정보화기기보급및관리(57억 4,300만원), 중학교협력종합예술활동지원(22억원), 어린이활동 공간환경개선(14억 8,100만원) 등을 포함한 57개 사업내역에 대하여 345억 5,200만원을 증액 조정한 것임
 - **시설사업비**는 학교신증설 31억 7,100만원 증액, 학교시설증개축 587억 1,300만원 증액,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270억 2,900만원 증액, 학교급식환경개선 143억 1,400만원 증액 등 총 2,036억 300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한 것임
 - **지방채 및 BTL상환**은 지방채 상환 4,245억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BTL임대료도 1억 1,4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4,246억 3,700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한 것임

〈표 2-4〉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내역			
		(A)	구성비	(B)	구성비	증감액(C=A-B)	구성비	증감률(C/B)	
합 계		9,440,868	100.0	8,784,129	100.0	656,739	100.0	7.5	
인건비	계	5,365,739	56.8	5,365,719	61.1	20	0.0	0.0	
	공무원 인건비	4,305,334	45.6	4,305,314	49.0	20	0.0	0.0	
	사립학교 인건비	1,060,405	11.2	1,060,405	12.1	0	0.0	0.0	
경상비	계	786,991	8.3	785,463	8.9	1,528	0.2	0.2	
	기관운영비	40,877	0.4	40,829	0.4	48	0.0	0.1	
	학교운영비	소계	746,114	7.9	744,634	8.5	1,480	0.2	0.2
		공립	683,499	7.2	682,019	7.8	1,480	0.2	0.2
		사립	62,615	0.7	62,615	0.7	0	0.0	0.0
사업비	계	2,596,835	27.5	2,366,281	27.0	230,554	35.1	9.7	
	교육사업비	1,869,663	19.8	1,842,712	21.0	26,951	4.1	1.5	
	시설사업비	727,172	7.7	523,569	6.0	203,603	31.0	38.9	
지방채 및 BTL 상황	계	683,574	7.2	258,937	3.0	424,637	64.7	164.0	
	지방교육채	579,003	6.1	154,480	1.8	424,523	64.6	274.8	
	BTL 상황	104,571	1.1	104,457	1.2	114	0.0	0.1	
예비비 및 기타		7,729	0.1	7,729	0.1	0	0.0	0.0	

3. 세입예산 관련 검토

가. 이전수입

(1) 중앙정부이전수입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기정예산(5조 108억 2,900만원) 보다 1,955억 6,900만원(3.9%)을 증액한 5조 2,063억 9,800만원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임

〈표 3-1〉 추가경정예산안 중앙정부이전수입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 경 예산안 (A)	기 정 예 산 (B)	증 감 내 역			
			증감액 (C=A-B)	증감률 (C/B)	일반재원	우선확정
중 앙 정 부 이 전 수 입	5,206,398	5,010,829	195,569	3.9	174,315	21,254
지 방 교 육 재 정 교 부 금	4,587,818	4,393,664	194,154	4.4	174,315	19,839
보 교 부 통 금	4,441,402	4,267,087	174,315	4.1	174,315	0
특 교 부 별 금	146,416	126,577	19,839	15.7	0	19,839
국 고 보 조 금	27,088	25,673	1,415	5.5	0	1,415
특 별 회 계 전 입 금	591,492	591,492	0	0.0	0	0

- 보통교부금⁶⁾ 추경 편성액은 4조 4,414억 200만원으로 기정예산 (4조 2,670억 8,700만원) 보다 4.1%, 1,743억 1,500만원이 증액된 것임

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교육부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에 그 미달액을 기준으로 하여 총액으로 교부하는 재원

- 지난 7월 정부추경에서 내국세와 연동하여 증액 편성된 보통교부금 1조 7,153억원⁷⁾ 중 10.2%⁸⁾에 해당하는 1,743억 1,500만원을 교육부가 추가 교부⁹⁾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임

○ **특별교부금**은 교육부가 국가시책사업·지역교육현안·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으로 기정예산(1,265억 7,700만원) 보다 198억 3,900만원(15.7%) 증액된 1,464억 1,600만원을 편성하여 제출되었음

- 특별교부금 증액분(198억 3,900만원)은 영어회화 전문강사 배치(57억 1,200만원),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47억 4,400만원), 직업계고 학생 비중 확대(44억 9,000만원) 등 총 28건의 교육사업비가 교부되어 「지방재정법」 제45조¹⁰⁾ 및 예산총칙 제9조¹¹⁾에 따라 우선확정된 것으로 확인됨

○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기 위해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하는 재원으로 기정예산(256억 7,300만원) 보다 5.5%, 14억 1,500만원이 증액된 270억 8,800만원을 편성한 것임

7) 정부추경예산서 상 내국세입 증가분 8조 8,148억원의 20.27%(1조 7,868억원) 중 96%

8) 2017년도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액의 17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배분 비율과 동일하게 배분됨

9) 정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보통교부금 추가 교부 알림(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4066, 2017.07.22.)

10)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11)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서 예산총칙」 제9조 회계연도 중에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되는 교부금, 보조금, 전입금 등 목적지정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회계연도내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지정지원금이 교부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

- 국고보조금 증액분(14억 1,500만원)은 초등스포츠강사인건비(11억 3,800만원) 및 초등스포츠강사 연수비(2억 7,700만원) 등 2건이 교육사업비로 교부되어 우선확정된 것임

(2)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편성액은 3조 5,518억 3,400만원으로 기정예산(2조 9,577억 6,700만원) 보다 5,940억 6,700만원(20.1%)을 증액편성하여 제출함

〈표 3-2〉 추가경정예산안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 경 예산안 (A)	기 정 예 산 (B)	증 감 내 역			
			증감액 (C=A-B)	증감률 (C/B)	일반재원	우선확정
지 방 자 치 단 체 이 전 수 입	3,551,834	2,957,767	594,067	20.1	588,521	5,546
법 이 전 수 정 입	3,485,505	2,896,984	588,521	20.3	588,521	0
비 이 전 수 정 입	66,329	60,783	5,546	9.1	0	5,546
광역자치단체 전 입 금	58,408	55,995	2,413	4.3	0	2,413
기초자치단체 전 입 금	7,921	4,788	3,133	65.4	0	3,133

- **법정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2항 및 제5항¹²⁾에 의하여 서울시의 2016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정산분 5,885억 2,100만원¹³⁾을 서울시의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¹⁴⁾하여 정산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비법정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9항¹⁵⁾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교육청으로 지원된 전입금으로 추경 성립 전 우선확정¹⁶⁾되어 금회 추경에 계상한 것임
- **광역자치단체전입금**은 「서울특별시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에 따른 서울시의 교육지원사업 전입금으로서 총 7건, 24억 1,300만원을 우선확정하고 이를 증액 편성한 것임
- **기초자치단체전입금**은 자치구가 지원한 학교복합화시설, BTL원금 및 이자 지원금, 성인문해교육지원, 한도서관한책읽기 등 11건에 대해 31억 3,300만원을 우선확정하고 이를 증액 편성한 것임

1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②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증감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3호 생략)
 ⑤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轉出金)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13) 2,163억 3,200만원(시도세전입금)+726억 8,200만원(담배소비세전입금)+1,995억 700만원(지방교육세전입금)

14) 2017.07.21. 의회 의결

1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⑨ 시·도는 관할구역의 교육·학예 진흥을 위하여 제2항 각 호 외에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16) 비법정전입금 우선확정분(55억 4,600만원)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교육사업비		시설사업비		BTL상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18	5,546	14	2,426	3	3,006	1	114
광역자치단체전입금		7	2,413	7	2,413	0	0	0	0
기초자치단체전입금		11	3,133	7	13	3	3,006	1	114

(3) 기타이전수입

- **기타이전수입** 편성액은 150억 3,300만원으로 기정예산(144억 9,000만원) 보다 3.7%, 5억 4,300만원¹⁷⁾ 증액된 것으로서 일반재원인 농협 기부금 5,000만원과 관련기관의 지원금 및 타 시·도교육청의 전입금 등 우선확정분 4억 9,300만원을 증액 요청한 것임

〈표 3-3〉 추가경정예산안 기타이전수입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 경 예산안 (A)	기 정 예산 (B)	증 감 내 역			
			증감액 (C=A-B)	증감률 (C/B)	일반재원	우선확정
기타이전수입	15,033	14,490	543	3.7	50	493
민이전수입	10,219	10,141	78	0.8	50	28
자치단체이전수입	4,814	4,349	465	10.7	0	465

17) 기타이전수입 증액분(5억 4,300만원) 상세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기관명	금액		
기 타 이 전 수 입	합 계				
	민 간 이 전 수 입	소 계		78	
		일반 재원	소 계		50
			서울어린이 더불어 큰 숲놀이 한마당 지원 (기부금*)	농협	50
			소 계		28
		우선 확정	공공도서관으로 떠나는 가족여행	한국도서관협회	3
	사어버폭력대응거점 WEE센터 운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4	
		유치원유아모집선발지원	행정자치부	1	
	자 치 단 체 간 이 전 수 입	소 계		465	
		우선 확정	셉테드(CPTED)** 사업관리운영지원	15개 시·도교육청	150
2015개정교육과정예따른교수학습자료개발보급			16개 시·도교육청	282	
2016년도 행복교육박람회 집행잔액			울산시교육청	33	

* 기부금 : 농협에서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으로 서울시기부심사위원회 심의 후 기탁

** 셉테드(CPTED) : 범죄예방환경설계(Criminal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의 약자로 건축환경의 적절한 설계와 효과적 사용을 통해 범죄유발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기법

나. 지방교육채

- 지방교육채¹⁸⁾ 편성액은 기정예산(1,334억 4,000만원)을 전액 감액(△1,334억 4,000만원) 편성 요청한 것임
- 2017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지방교육채¹⁹⁾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의 재원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교육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그 발행규모를 통보한 것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 금번 추경안의 지방교육채는 교육부의 통보 없이 서울시교육청이 자체적으로 2017년도분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서 지난 2013년도 이후 처음으로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됨

〈표 3-4〉 지방교육채 발행(세입)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 도		2017	2016	2015	2014	2013
세입예산 총액 ^{주1)} (A)		9,440,868	8,628,272	8,228,090	7,704,920	8,045,686
지 방 교 육 채	발행(예정)액 (B)	0	421,065	815,070	242,143	131,082
	구 성 비 (B/A)	0.0	4.9	9.9	3.1	1.6

주1. 2017년도 :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준, 2013~2016년도 : 최종 예산 기준

18) 사업별 설명자료 p.17

19) 2017년도 지방교육채 세입예산 편성(발행 규모) 현황

구 분	2017년도 본예산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예산편성액 (발행규모)	2,705억 1,600만원	1,334억 4,000만원
발행근거 (통보공문)	2017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예정교부 알림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6690, 2016.10.21.)	2016회계연도 세계양여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교부 통지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2641, 2017.04.21.)

- 금번 추경안의 세입 재원인 보통교부금 1,743억원 및 서울시 법정전입금 5,885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에서 지방교육채 발행계획을 취소하고, 전액 감액 조정한 것은 결산상 잉여금 중 법정경비 및 이월금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세출 예산과 관계없이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지방회계법」 제19조²⁰⁾의 취지를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불과 2개월여 전인 제1회 추경예산안 제출²¹⁾ 당시 정부 추경²²⁾ 규모나 서울시의 법정전출금의 조기 정산 여부를 실무적으로 파악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 결과적으로 지난 제1회 추경예산 중 지방교육채를 세입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에서 필요하지도 않은 지방교육채의 발행 계획을 수립하였다가 번복한 것은 행정력 낭비는 물론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사례로 판단됨

20) 「지방회계법」 제19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剩餘金)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잉여금을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정하여진 금액

2.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금

21) 2017.06.01. 시의회 제출

22) 2017.05.31. 추경관련 당정협의(기획재정부 홈페이지 기재부뉴스), 2017.06.07. 국회 제출

4. 세출예산 관련 검토

가. 세출예산 증액 관련

(1) 일반재원 증액

① 인건비 및 경상비

- 계약제직원인건비 및 학교운영비지원(노사협력담당관) 사업의 **맞춤형복지비**²³⁾와 **교육공무직원처우개선비**²⁴⁾는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맞춤형 복지 기본항목 점수를 상향(350점→450점) 적용하고자 15억원 증액 편성 요청한 것임

〈표 4-1〉 교육공무직원 맞춤형복지비 증액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내역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추경증감 (A-B)	비고
합계	7,449	5,949	1,500	
맞춤형복지 (교육행정기관)	142	122	20	교육행정기관 교육공무직원 195명
맞춤형복지 (각급학교)	7,307	5,827	1,480	각급학교 교육공무직원 14,800명

23) 사업별 설명자료 p.45

24) 사업별 설명자료 p.47

- 공무원의 경우, 2017년도 맞춤형복지 기본항목 점수 100점을 인상²⁵⁾하여 연초부터 적용하고 교육공무직원 맞춤형복지 기본항목 점수는 전년과 동일 수준인 350점으로 일률 배정한 바, 교육공무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2017년도 공무원 맞춤형복지 기본항목 점수와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기본항목 복지점수 (1인당 100점, 금100,000원)를 추가 배정하고자 하는 것임
- 공무원의 경우, 맞춤형복지 기본항목 점수 상향에 따른 소요예산을 이미 본예산에 반영한 반면 교육공무직원의 경우에는 적용기간²⁶⁾을 4개월 남긴 현시점에 추경예산으로 증액 편성하는 것인 바, 본예산 편성 시 재원의 한정성이 고려되어야 하나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 간 우선순위를 둔 결과일 수밖에 없어 향후 선별적 편성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타 시·도 교육청²⁷⁾의 맞춤형복지비 수준도 고려될 필요가 있어 향후 맞춤형복지의 점진적인 증액 필요성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5) 공무원 맞춤형복지 기본항목 점수 : 350점(2016년) → 450점(2017년)

26) 맞춤형복지제도 적용기간 : 2017.01.01. ~ 2017.12.31.

27)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맞춤형복지비 현황

교육청명	지 원 현 황	교육청명	지 원 현 황
서울	기본 350점	경기	기본 350점
부산	기본 450점	강원	기본 300점 + 근속(최대 200점)
대구	기본 350점 + 근속(최대 100점)	충북	기본 300점
인천	기본 350점 + 근속(최대 100점)	충남	기본 400점 + 근속(최대 100점)
광주	기본 350점 + 근속(최대 150점)	전북	기본 400점
대전	기본 400점 + 근속(최대 100점)	전남	기본 350점 + 근속(상한 없음)
울산	기본 450점	경북	기본 400점
세종	기본 400점 + 근속(최대 100점)	경남	기본 250점
		제주	기본 300점 + 근속(최대 100점)

* 16개 시·도 산술평균 맞춤형복지비 : 431점

② 교육사업비

- 금번 추경안에 증액요청된 교육사업비는 기정예산(1조 8,427억 1,200만원) 대비 1.5%, 269억 5,100만원 증액 편성된 것으로 추경재원(6,567억 3,900만원)의 4.1%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토됨

〈표 4-2〉 추가경정예산안 교육사업비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내역				
			증감액	구성비 ¹⁾	증감률	일채반원	우선확정
합계	1,869,663	1,842,712	26,951	4.1	1.5	2,778	24,173
인적자원운용	22,367	22,221	146	0.0	0.7	100	46
교수학습활동지원	452,595	424,596	27,999	4.3	6.6	8,663	19,336
교육복지지원	1,253,967	1,255,853	△1,886	△0.3	△0.2	△6,631	4,745
보건/급식/체육활동	18,123	16,695	1,428	0.2	8.6	1428	0
평생교육	24,706	25,584	△878	△0.1	△3.4	△894	16
직업교육	673	673	0	0.0	0.0	0	0
교육행정일반	97,232	97,090	142	0.0	0.1	112	30

주1. 추경재원(6,567억 3,900만원)에 대한 비율

- 교육사업비 추경 증액분(269억 5,100만원) 중 일반재원은 10.3%(27억 7,800만원)이고, 89.7%(241억 7,300만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교부되어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을 위한 우선확정분임

㉔ 학교정보화기기보급및관리

- 학교정보화기기보급및관리²⁸⁾(교육혁신과)는 초·중학교 컴퓨터교육실 노후PC 교체를 위하여 기정예산(4억 5,800만원) 대비 1,253.9%, 57억 4,300만원 증액 편성 요청한 것임

〈표 4-3〉 학교정보화기기보급및관리 추경증감 내역

(단위 : 교, 대, 백만원)

학교급별	대상학교수	교체PC수	추경증감	비 고
합 계	258	5,512	5,743	
초등학교	152	3,902	4,066	대당 1,042천원 지원
중학교	106	1,610	1,677	

※ 초등학교 민간참여컴퓨터교실 운영교 및 노후PC 10대 미만교 지원 제외

- 동 사업은 2018학년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노후PC 교체의 필요성은 있으나, 추가경정예산은 일반적으로 회계연도 개시 이후 예측하지 못하거나 긴급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되는 것으로
- 2018학년도부터 정보교과가 필수화되는 것을 이미 지난 2015년 9월 교육부 고시²⁹⁾로 사전 인지하였을 것으로 판단됨에도 2017년도 본예산은 물론 2017년도 제1회 추경에도 편성 요청하지 않은 바, 사업주관 부서의 소극적 행정행위로 인한 예산편성의 오류를 금번 추경을 통해 희석·상쇄하는 것으로 판단됨

28) 사업별 설명자료 p.59

29)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74호(2015.09.03.)]

구 분	2009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 (초) 교과(실과) ICT 활용 교육 단위 포함	○ (초) 교과(실과) 내용을 SW 기초 소양교육으로 개편
	○ (중) 선택교과 '정보'	○ (중) 과학/기술·가정/정보 교과 신설
	○ (고) 심화선택 '정보'	○ (고) '정보' 과목을 심화선택에서 일반선택 전환, SW 중심 개편

㉔ 문화예술지원

- **문화예술지원**³⁰⁾(교육혁신과) 중 **중학교협력종합예술활동**³¹⁾사업은 동 활동 운영 중학교(172교) 중 연습실 미확보 학교에 유희공간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연습공간을 마련하고자 22억원을 증액 편성 요청한 것인 바

〈표 4-4〉 중학교 협력 종합예술활동 연습장 설치 현황

(단위 : 교)

대상교(A)	기 설 치 교				추경 지원교(C)	미설치교 (A-B-C)
	소계(B)	교육청지원	서울시지원	특교지원		
172	68	13	45	10	55	49 ^{주1}

주1. 유희교실이 없어 연습장 설치가 어려운 학교 포함

- 중학교 협력 종합예술활동은 금년도 시범운영을 통해 2020년도 까지 모든 중학교에 적용 예정인 사업으로 향후 지속적인 예산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㉕ 사립유치원회계운영지원

- **사립유치원회계운영지원**³²⁾(유아교육과)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³³⁾ 개정·시행에 따라 전체 사립유치원 원장 등 관리자 대상 회계책임제고 연수 등을 추진하고자 1,100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한 것임

30) 사업별 설명자료 p.69

31) 중학교 3년 중 최소 1학기 이상 교육과정 내에서 뮤지컬, 연극, 영화 등의 종합예술활동에 모든 학생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참여하고 발표하는 학생중심 예술체험교육으로 2017년 시범운영을 통해 2020년까지 모든 중학교에 적용할 예정임

32) 사업별 설명자료 p.77

33)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교육부 공고 제2016-284, 2016.09.22.)

- 개정안 내용 : 유아교육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예결산서 세입세출항목 별도 제시, 사립유치원의 차입금 운영가능 기관 확대, 사립유치원의 적립금·차입금 운영 지침 규정

〈표 4-5〉 사립유치원회계운영지원 추경증감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내역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추경증감 (A-B)	비고
사립유치원회계운영지원	18	7 ^{주1}	11 ^{주2}	2015년도 편성액 7백만원 2016년도 편성액 7백만원

주1. 기정예산 내역 : 사립유치원 회계운영 지침 인쇄 및 회계 운영 담당 연수

주2. 추경증액 내역 : 사립유치원 회계운영 체제 정비, 집중 회계연수 및 재정업무 컨설팅

- 개정 법규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을 위한 연수가 필요하나, 동 법규의 개정안은 지난 2016년도 9월 입법 예고된 바, 법규 개정 사항에 대한 연수 필요성은 충분히 사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 추가경정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이후 예측하지 못하거나 긴급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예산편성의 오류를 추경으로 희석시키는 사례가 남용되어서는 아니될 것으로 판단됨

㉔ 교원회복력지원인권평화직무연수

- 교원회복력지원인권평화직무연수³⁴⁾(초등교육과) 사업은 교원의 성찰과 치유 중심의 직무연수 시행에 필요한 1억원을 신규 편성 요청한 것임

〈표 4-6〉 연수대상자 예정 인원

(단위 : 명)

계	유치원	초등	중등
125	25	50	50

34) 사업별 설명자료 p.89

- 동 사업의 사업별 설명자료에는 ‘2017년 9월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계획 사전 협의’ 라고 기재되어 있어 추경안이 제출된 현시점에 사업의 실효성을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음
- 아울러 전체 교원(약 78,000여명)의 0.1%(125명)에 지나지 않는 극소수의 교원을 대상으로 학기 중 단기 합숙형(3박4일) 연수로 교권침해 문제가 해소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동 사업이 추경을 반영하여 시행할 만큼 긴급하고 시급한 사업인지에 대해 원점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㉔ 학교미세먼지관리

- **공기정화장치설치**³⁵⁾(체육건강과)는 미세먼지 확산으로부터 유치원생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공립 단설유치원 21개원, 154학급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1억 2,300만원을 신규 편성 요청한 것임
- 미세먼지 확산에 따라 유아들의 건강 보호를 위한 대책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교육부가 2017년도 정부 추경³⁶⁾으로 확보된 공기정화장치 설치 사업에 대하여 공기정화장치 시범설치 및 공기정화장치 유형별 효율성 평가를 통한 설치기준을 금년도 12월까지 마련하는 것으로 계획³⁷⁾ 중인 바

35) 사업별 설명자료 p.199

36) 공기정화장치 시범설치 : 177억원(국고 87억원 + 특별교부금 90억원) / 효율성 평가 : 3억원

37)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시범사업 추진계획(교육부, 2017. 8.)

- (공기정화장치 시범설치) 공기질 취약지역 내 일부 초등학교 대상으로 유형별 공기정화장치* 시범설치(17.8월~)
- * 기계적 환기장치(급기구 필터), 냉난방기기 부가기능 설치, 공기청정기, 창문형 환기장치 등
- (효율성 평가) 공모를 거쳐 연구기관 선정 후 공기정화장치 유형별 효율성 평가 실시 및 설치기준 등 마련(17.8~12월)
- 시범적용 학교수 : 서울 64교(전국 355교) / 교당 50백만원 기준

- 공기정화장치 설치의 필요성은 있으나 최대효과를 얻기 위한 기준 마련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³⁸⁾
- 따라서, 교육부의 공기정화장치에 대한 효율성 평가 및 설치 기준이 마련되기 전 공립 단설유치원 전체에 공기정화장치를 일시에 설치하기 보다는 시범사업의 성격상 소수 설치 후 기준·효과성 등이 검토된 이후 설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㉞ 어린이활동공간환경개선

- **어린이활동공간환경개선³⁹⁾**(체육건강과)은 어린이활동공간⁴⁰⁾지도·점검 결과 환경안전관리기준 초과학교⁴¹⁾에 대해 시설비를 지원하고자 14억 8,100만원 신규 편성 요청한 것임
- 「환경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환경관리기준을 초과한 학교는 3개월 이내(부득이한 경우 3개월 연장 가능) 개선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며, 미행이시 벌칙 규정⁴²⁾이 적용되는 바 1,000만원

38) 미세먼지 시·도교육청 담당자 협의회 자료(2017.05.15.) p.13

-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 설치 문제는 관리인력예산, 부실 관리 시 효율 저하 및 2차 오염 등 종합적 검토를 통한 신중한 접근 필요

- (환기시스템) 학교 신설, 증개축 및 대규모 보수(석면교체 등) 시 건물여건(층고)에 따라 가능한 경우 설치 권장

39) 사업별 설명자료 p.197

40) 「환경보건법」 제2조(정의) 8. "어린이활동공간"이란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등 영유아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정의)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보육실
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교실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의 교실 및 학교도서관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교실(어린이가 사용하는 교실만 해당한다)

41) 점검교 314교 중 207교(65.9%) 부적합 판정

42) 「환경보건법」 제3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3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의 개선명령 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의 준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이상 예산이 소요되어 학교 자체 예산으로 시설 개선이 어려운 학교⁴³⁾에 대한 시설비를 편성하고자 하는 것임

〈표 4-7〉 어린이활동공간환경개선 추경증액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내역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추경증감 (A-B)	비고
환경안전관리기준 초과학교 시설개선	1,481	0	1,481	바닥, 문틀, 창틀 등 개선 및 교체

㉘ 서울학생과학체험관건립

- 서울학생과학체험관건립⁴⁴⁾(교육혁신과)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부대의견⁴⁵⁾을 반영하여 건립에 필요한 사전절차인 타당도조사⁴⁶⁾에 필요한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 요청한 것임

43) 지원예정교 40개교(유치원 1개원, 초등학교 39개교) (교당 10,024천원~324,000천원)

44) 사업별 설명자료 p.71

45)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p.31

Ⅷ. 부대의견

2. 서울특별시교육청과학전시관 내 ‘서울학생과학체험관 신축 타당성 조사’ 예산을 2018년도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할 것

46) 「지방재정법」 제37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타당성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시설사업비

- 금번 추경안에 편성된 시설사업비는 7,271억 7,200만원으로 기정 예산(5,235억 6,900만원) 대비 38.9%, 2,036억 3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써 추경재원(6,567억 3,900만원)의 31.0%에 해당함

〈표 4-8〉 추가경정예산안 시설사업비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내 역				
		증 감 액 구성비 ^{주1}	증감률	일반재원	우선확정	
727,172	523,569	203,603 (100.0)	31.0	38.9	200,597 (98.5)	3,006 (1.5)

주1. 추경재원(6,567억 3,900만원)에 대한 구성비율임

- 최근 5년간의 추경을 통한 시설사업비 규모를 검토하면 금번 추경의 시설사업비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는 바, 추경으로 증액 편성된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적기에 시설개선이 추진되어 대규모 이월·불용사례가 발생하는 사례를 최소화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4-9〉 최근 5년간 추경규모 및 시설사업비 규모

(단위 : 백만원)

연 도	2017	2016	2015	2014	2013
추경규모(증감액)	656,739	435,175	431,841	233,600	433,747
시 설 사 업 비 규 모 (증 감 액)	203,603	117,470	104,749	△37,507	200,953

※ 2017년도 : 제2회 추경예산(안) 기준, 2016년도 : 제3회 추경예산 기준, 2013~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기준

㉠ 학교신·증설

- 학교신증설(학교지원과) 사업은 기정예산(1,009억 4,600만원)보다 3.1%, 31억 7,100만원 증액된 1,041억 1,7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4-10〉 추가경정예산안 학교신증설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내역				
			증감액	증감률	일반재원	우선확정	
합계	104,117	100,946	3,171	0.5	3.1	3,171	0
학교신설	91,910	88,938	2,972	0.5	3.3	2,972	0
교실증축	12,207	12,008	199	0.0	1.7	199	0

- 학교신설⁴⁷⁾의 경우, 4개교(유 3교, 초 1교)에 대한 시설비 및 설계비를 증액하는 것으로 기정예산(889억 3,800만원) 대비 29억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제출한 것임

〈표 4-11〉 학교신설 추경증감 내역

(단위 : 백만원)

급별	지원청	학교명	개교예정	학급수	추경증감	추경편성 사유
학교신설계 (4개교)					2,972	
유	강남서초	가칭양재유치원	2018.09.	7(특1)	600	주차장 확보 및 지하층 자료실 추가 설치 공사비 증액
유	강서양천	개화초병유	2018.03.	3	654	취학수요가 높아 개화초 교실을 재배치하여 병설유치원 신설
유	강서양천	등촌초병유	2018.03.	3	948	취학수요가 높아 등촌초 도서실 재배치 및 유희교실 활용하여 병설유치원 신설
초	동부	가칭) 양원초	2020.03.	30(병유6)	770	사전절차 후 개교일정에 맞춰 즉시 추진할 수 있도록 설계비 우선 반영

47) 사업별 설명자료 p.213

- 가칭)양재유치원⁴⁸⁾의 경우 2018년 9월에 개원되는 공립 단설 유치원으로 본예산에 33억 9,9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주차장 확보, 지하층 자료실 추가 설치 등 부대공사를 마무리하고자 시설비 6억원을 증액 요청한 것임
- 개화초병설유치원⁴⁹⁾ 및 등촌초병설유치원⁵⁰⁾의 경우 초등학교의 교실 재배치 및 유휴교실 활용을 통해 병설유치원을 신설하고자 각각 6억 5,400만원, 9억 4,800만원을 증액 요청한 것임
- 가칭)양원초⁵¹⁾의 경우 2019년 12월 입주예정인 양원 공공주택 지구(3,198세대)의 학생 760명을 수용하기 위해 병설유치원 6학급을 포함하여 30학급 규모로 설립되는 학교로 2020년 3월 개교 예정이나,
 - 개교 일정에 맞추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7조⁵²⁾에 따른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⁵³⁾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등의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예산안에 편성되어 제출된 것으로 확인⁵⁴⁾됨

48) 위치 : 서초구 바우포로 18길 14(양재동)

49) 위치 : 강서구 양천로 11(방화동)

50) 위치 : 강서구 등촌로39길 71(등촌2동)

51) 위치 : 중랑구 망우본동 306-37

52)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이하 생략)

5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이하 생략)

54) 제2회 추경예산안 제출일(2017.08.14.) 현재 자체투자심사는 실시(2017.07.05.)하였으나, 중앙투자심사(2017.08.18.), 공유재산 심의(2017.10월 예정) 등 사전절차 미이행

- 교실증축⁵⁵⁾의 경우 기정예산(120억 800만원)보다 1억 9,900만원 증액된 122억 7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1개교(초 1교)에 대한 건설비를 편성한 것임

〈표 4-12〉 교실증축 추경증감 내역

(단위 : 백만원)

급별	지원청	학 교 명	증축완료	증축규모 (학급수)	추경증감	증감사유
교 실 증 축 계 (1개교)					199	
초	강남서초	우 면 초	2018.02.	2	199	학령인구 유입에 따른 과밀학급 개선을 위해 특별교실(2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하고 주차장 피로티에 특별교실(1.5실) 증축

- 우면초 교실증축은 우면2공공주택지구 내 학령인구 유입에 따라 증가되는 학생을 수용하고, 과밀학급을 개선⁵⁶⁾하기 위해 특별교실(2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하며 주차장 피로티에 특별교실(1.5실)을 증축하기 위한 건설비를 증액 요청한 것임

55) 사업별 설명자료 p.211

56) 우면초 중장기 학생배치계획

(단위 : 명)

학교명	2017학년도			구 분	연 도(수용지표)					
	학생수	학급수	급당인원		2017 (26)	2018 (26)	2019 (26)	2020 (26)	2021 (26)	
우면초	1,197	43(1)	28.5	증축 전	급당인원	28.5	33.3	35.8	35.7	34.7
					학생수	1,197	1,399	1,503	1,499	1,456
				증축 후	급당인원		31.8	34.2	34.1	33.1
					학생수		1,399	1,503	1,499	1,456

㉔ 학교시설증개축

- **학교시설증개축**(교육시설안전과) 사업은 학교 내 강당 겸 체육관, 특별교실 등을 설치하고자 1,115억 2,0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기정예산(528억 700만원) 보다 587억 1,300만원이 증액된 것임

〈표 4-13〉 추가경정예산안 학교시설증개축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내역				
			증감액	구성비 ^{주1}	증감률	일반재원	우선확정
합계	111,520	52,807	58,713	8.9	111.2	55,707	3,006
강당겸체육관	95,499	40,039	55,460	8.4	138.5	55,460	0
기타증축	16,021	12,768	3,253	0.5	25.5	247	3,006

주1. 추경재원(6,567억 3,900만원)에 대한 구성비율임

- **강당 겸 체육관⁵⁷⁾**은 39개교의 체육관을 추가로 증축하고자 기정예산(400억 3,900만원) 대비 138.5%, 554억 6,000만원이 증액된 954억 9,9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서울시교육청은 2013년도에 수립한 체육관 증축 재정투자계획⁵⁸⁾에 따라 체육관 증축 대상연도(우선순위)를 기준으로 동사업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57) 사업별 설명자료 p.223

※ 강당 겸 체육관 보유현황(2017. 8. 기준)

학교수	보유	증축대상	증축제외
1,339	1,089	131*	127**

* 증축대상 131교 중 8교는 기확보되어 있지만 규모 협소 등 재설치 대상

** 증축제외 127교는 도시계획, 부지협소, 재개발 등으로 설치 어려움

58) 체육관 증축 재정투자계획 변경(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과-3721, 2013.06.10.)

- 39개교에 대한 추경 편성으로 2014년도 대상사업(21개교)에 대한 예산은 모두 편성되었고, 2015년도 대상사업(21개교) 및 2016년도 대상사업(20개교)에 대해서는 3개교⁵⁹⁾를 제외한 38개교에 대한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검토되는 바,
- 그 동안 한정된 교육재정 여건으로 지체되었던 2014~2016년도 대상 물량 중 상당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사료됨

〈표 4-14〉 강당 겸 체육관 대상연도별 추경편성 현황

(단위 : 교)

대상연도	대상 학교수	기편성 (일부편성 포함)	금회 편성 ^{주1}	미편성 ^{주2}
합 계	105	40	39	26
2014년도 대상	21	19	2	0
2015년도 대상	21	8	12	1 (고일초)
2016년도 대상	20	4	14	2 (가락초, 삼릉초)
2017년도 대상	21	6	3	12
2018년도 대상	20	3	6	11
개방형 체육관 (홍은초, 신화중)	2	0	2	0

주1. 금회 편성된 39개교는 증축공정상 기편성(확보)액이 있더라도 '기편성' 란에 중복기재하지 않음

주2. 현재까지 예산편성 실적이 전혀 없는 학교수

- 다만, 동 사업이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된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시급성은 인정되나, 2019년도 완공이거나 설계비부터 준공 후 소요되는 내부비품비까지 한번에

59) 강당 겸 체육관 증축 예산 미편성 학교

- 고일초(2015년도 대상) :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하여 휴교(2018년 3월)예정으로 재개교에 맞춰 추진 예정
- 가락초(2016년도 대상) : 복합건물 증축으로 추진 중
- 삼릉초(2016년도 대상) :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심의

편성된 사업의 경우 금번 회계연도 잔여기간을 고려할 때 명시
이월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됨

〈표 4-15〉 강당 겸 체육관 추경증감 내역

(단위 : 백만원)

지원청	학교명	총 소요액	기 확보액	추경증감					향 후 소요액	추경사유
				설 계 보상비	설계비	시설비	내 부 비품비	소계		
합	계 (39개교)	94,696	19,661	80	970	53,500	910	55,460	19,575	
동	부 용 두 초	2,345	110			2,205	30	2,235	0	'16년도대상
동	부 원 목 초	2,526	0	10	100			110	2,416	'18년도대상
동	부 동 원 중	2,247	1,143			1,074	30	1,104	0	'15년도대상
동	부 전 동 중	2,555	110			2,415	30	2,445	0	'16년도대상
동	부 이화여자 미디컬센터	2,496	1,283			1,213		1,213	0	'15년도대상
서	부 성 서 초	2,555	110			2,415	30	2,445	0	'16년도대상
서	부 흥 은 초	1,298	70			1,198	30	1,228	0	개방형다목적 체육관 선정
서	부 중 암 중	2,726	1,383			1,313	30	1,343	0	'15년도대상
남	부 매 봉 초	2,247	110			2,107	30	2,137	0	'16년도대상
남	부 신구로초	2,555	1,852			210	30	240	463	산재생에너지 적용부족분
남	부 영 남 중	3,631	1,283			2,308	40	2,348	0	'15년도대상
북	부 공 릉 초	2,064	0	10	100			110	1,954	'17년도대상
북	부 노 원 초	2,064	110			1,924	30	1,954	0	'16년도대상
북	부 상 월 초	2,064	1,052			982	30	1,012	0	'15년도대상
북	부 신 화 초	2,555	1,192			1,333	30	1,363	0	'15년도대상
북	부 온 곡 중	2,526	70			2,426	30	2,456	0	'16년도대상
북	부 세그루패션 디자인고	2,496	0		100			100	2,396	'18년도대상

(단위 : 백만원)

지원청	학교명	총 소요액	기 확보액	추경증감					향 후 소요액	추경사유
				설 계 보상비	설계비	시설비	내 부 비품비	소계		
강동송파	가 주 초	2,526	0	10	100	2,386	30	2,526	0	'15년도대상
강동송파	아 주 초	2,345	0	10	100			110	2,235	'18년도대상
강동송파	잠 실 중	2,753	0		70			70	2,683	'17년도대상
강동송파	풍 성 중	2,345	110			2,205	30	2,235	0	'16년도대상
강동송파	한 산 중	2,345	110			2,205	30	2,235	0	'16년도대상
강서양천	남 명 초	2,449	110			2,309	30	2,339	0	'16년도대상
강서양천	신 월 초	2,526	110			2,386	30	2,416	0	'16년도대상
강서양천	삼 정 중	2,247	110			2,107	30	2,137	0	'16년도대상
강서양천	신 화 중	2,900	2,870				30	30	0	내부비품비
강남서초	대 곡 초	2,526	1,283			1,213	30	1,243	0	'14년도대상
강남서초	대 현 초	2,555	1,192			1,333	30	1,363	0	'15년도대상
강남서초	방 일 초	2,555	110			2,415	30	2,445	0	'16년도대상
강남서초	압구정초	2,555	1,192			1,333	30	1,363	0	'15년도대상
강남서초	청 담 초	2,345	0	10	100			110	2,235	'18년도대상
강남서초	학 동 초	2,345	110			2,205	30	2,235	0	'16년도대상
강남서초	도 곡 중	2,247	0	10	100	2,107	30	2,247	0	'16년도대상
강남서초	신 구 중	2,247	0	10	100			110	2,137	'18년도대상
강남서초	압구정중	2,449	1,144			1,275	30	1,305	0	'15년도대상
강남서초	언 북 중	2,345	1,192			1,123	30	1,153	0	'15년도대상
동작관악	관 악 초	2,270	70			1,530	30	1,560	640	복합화추진 '14년도대상
동작관악	난 곡 초	2,345	70			2,245	30	2,275	0	'15년도대상
동작관악	남 사 초	2,526	0	10	100			110	2,416	'17년도대상

- **기타증축**⁶⁰⁾은 6개교의 특별교실, 연결통로, 복합화시설 증축 등을 위해 32억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임

〈표 4-16〉 기타증축 추경증감 내역

(단위 : 백만원)

지원청	학교명	사업내역	총소요액	기확보액	추경증감	향 후 소요액	추경사유
합 계 (6개교)			28,204	14,996	3,253	9,955	
서 부	덕 산 중	연결통로 증축	368	318	50	0	진입로 개선, 방음벽 추가 등 부족분
남 부	개 명 초	특별교실 증축	777	740	37	0	준공에 따른 내부비품비
남 부	동일여고	연결통로 증축	0	40	△40	0	예산 반납 ^{주1)}
강 동 송 파	가 락 초	복합건물 증축	7,255	0	200	7,055	2019.3월 재개교추진과 연계한 복합건물설계비
동 작 관 악	관 악 초	복합화시설 증축	6,961	1,955	2,106	2,900	관악구 전입금 우선확정
성 북 강 북	수 송 초	복합화시설 증축	12,843	11,943	900	0	성북구 전입금 우선확정

주1. 연결통로를 증축할 경우, 연결되는 양쪽 구조물(본관, 신관)에 대한 구조안전 확인과 지진에 대한 구조안전 진단을 실시하여야 함에 따라 용역비와 보수보강비가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학교에서 판단하여 반납

- 이 중 일반재원(2억 4,700만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덕산중 등 3개교⁶¹⁾의 연결통로·특별교실·복합건물 증축을 위한 시설비·내부비품비·설계비 등(2억 8,700만원)과 동일여고의 연결통로 증축 설계비 반납금(△4,000만원)이며,

- 우선확정분(30억 6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으로 관악초 및 수송초의 복합화시설 증축비인 것으로 확인됨

60) 사업별 설명자료 p.245

61) 덕산중, 개명초, 가락초

- **가락초** 복합건물⁶²⁾ 증축의 경우,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에 따라 현재 휴교('14년 3월~'19년 2월)중인 단지 내 **가락초**의 리모델링 및 증축사업⁶³⁾ 중 증축건물에 해당되는 설계비(2억원)를 편성한 것임
- 이미 본예산에서 리모델링 건물에 대한 설계비(2억 4,000만원)가 편성되어 추진 중인 사업인 바, 교육재정의 한정성으로 인해 예산의 일부 편성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으나 각 건물간의 효율적인 교실 배치 및 원활한 재개교 추진을 위해 복합건물에 대한 설계비는 본예산에 일괄 편성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동 건의 경우, 사전절차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⁶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예산안이 제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추경 편성 여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㉔ 학교급식환경개선

- **학교급식환경개선**(체육건강과)은 HACCP⁶⁵⁾시스템에 부합하는 위생적인 급식환경을 조성하고자 623억 2,6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기정예산(480억 1,200만원) 보다 29.8%, 143억 1,400만원을 증액한 것임

62) 복합건물 배치계획 : 급식실 및 학생식당(1층), 병설유치원(2층, 5학급), 특별교실(3층, 10실), 강당겸 체육관(4층)

63) **가락초** 리모델링 및 증축사업

(단위 : 억원)

구 분	교사동 리모델링 (8,805.4㎡)	복합건물 증축 (3,976.0㎡)	내부비품비	계
사업비	81	73	3	157

64) 2017년 11월(제277회 정례회) 중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 예정

65) HACCP :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표 4-17〉 추가경정예산안 학교급식환경개선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세세부사업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내역				
			증감액	구성비	증감률	일반재원	우선확정
합 계	62,326	48,012	14,314	2.2	29.8	14,314	0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32,684	21,084	11,600	1.8	55.0	11,600	0
노후급식시설개보수	13,759	11,109	2,650	0.4	23.9	2,650	0
노후조리기구 교체 및 확충	14,803	14,739	64	0.0	0.4	64	0
신규 학교 조리기구 구입	1,080	1,080	0	0.0	0.0	0	0

주1. 추경재원(6,567억 3,900만원)에 대한 구성비율임

- **급식실및학생식당신증축⁶⁶⁾**은 20개교(초 9교, 중 9교, 고 2교)의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을 위하여 기정예산(210억 8,400만원)보다 116억원을 증액한 326억 8,4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4-18〉 급식실 및 학생식당신증축 추경증감 내역

(단위 : 백만원)

지원청	설립별	학교명	총소요액	기확보액	추경증감	향후소요액	비고
합 계 (20개교)			25,383	6,160	11,600	7,623	
동부	공립	중화중	709	0	709	0	
서부	공립	아현초	1,000	750	250	0	
서부	공립	홍은초	1,222	50	1,172	0	체육관 병행

66) 사업별 설명자료 p.191

※ 학생식당 보유현황(2017. 3. 기준)

급별	계	초	중	고	특수
학교수	1,331 (100.0)	602	381	321	27
보유학교수	955 (71.8)	321	300	310	24
미설치교수	376 (28.2)	281	81	11	3

(단위 : 백만원)

지원청	설립별	학교명	총소요액	기확보액	추경증감	향 후 소요액	비 고
서 부	공 립	성 산 중	1,925	70	1,855	0	
서 부	공 립	불 광 중	291	0	291	0	
서 부	사 립	한세사이버 보 안 고	164	0	164	0	
남 부	공 립	신도림중	1,917	60	500	1,357	
북 부	공 립	신 화 초	1,300	0	1,300	0	체육관 병행
북 부	공 립	상 계 중	1,891	1,851	40	0	
북 부	공 립	창 북 중	1,467	1,167	300	0	
북 부	공 립	불 암 중	1,757	1,547	210	0	
강동송파	공 립	풍 성 초	644	509	135	0	
강동송파	공 립	오 금 고	1,996	91	1,905	0	
강서양천	공 립	남 명 초	1,300	0	40	1,260	체육관 병행
강서양천	공 립	등 현 초	1,300	0	40	1,260	체육관 병행
강남서초	공 립	방 일 초	1,300	0	1,300	0	체육관 병행
강남서초	공 립	압구정초	1,300	65	1,235	0	체육관 병행
강남서초	공 립	대 현 초	1,300	0	59	1,241	체육관 병행
강남서초	공 립	대 치 중	1,300	0	49	1,251	
강남서초	공 립	봉 은 중	1,300	0	46	1,254	

- 다만, 신화초·대현초·방일초·압구정초 등 4개교는 체육관 증축과 병행 추진됨에 있어 체육관 부분은 사전절차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이행하였으나,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심의 예정인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확인⁶⁷⁾되는 바,

67) 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7757(2017.08.18.)

- 체육관 증축업무(교육시설안전과 소관)와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업무(체육건강과 소관)의 소관부서가 달라 업무협조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로서 향후 업무 조정 등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이 체육관 증축과 동시에 추진되는 것이 예산절감은 물론 사업 추진의 효율성도 제고될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보다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노후급식시설개보수**⁶⁸⁾는 조리실 리모델링, 냉난방기·보일러·덤웨이터·배기덕트 교체 등 23개교의 노후급식시설개선을 위해 기정예산(111억 900만원) 대비 26억 5,000만원이 증액된 137억 5,900만원을 편성한 것임
- **노후조리기구교체및확충**⁶⁹⁾은 기정예산(147억 3,900만원)에 양천고의 취반기외 3종 교체비로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148억 300만원이 편성 요청한 것임

㉔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교육시설안전과) 노후시설개선**⁷⁰⁾은 화장실, 전기, 냉난방시설 등 13개 분야의 시설물 개선을 위해 기정예산(3,117억 8,400만원) 보다 1,270억 2,900만원이 증액된 4,388억 1,3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68) 사업별 설명자료 p.193

69) 사업별 설명자료 p.195

70) 사업별 설명자료 p.250

〈표 4-19〉 추가경정예산안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내 역				
			증 감 액	구성비 ¹⁾	증감률	일반재원	우선확정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노후시설개선)	438,813	311,784	127,029	19.3	40.7	127,029	0

주1. 추경재원(6,567억 3,900만원)에 대한 구성비율임

- 최근 5년간 노후시설개선 예산 규모를 검토하면 금번 추경 편성 규모(4,388억 1,300만원)가 가장 큰 것으로 검토되는 바, 회계연도 종료시점을 고려한 공정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4-20〉 최근 5년간 노후시설개선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연 도		2017	2016	2015	2014	2013
노후시설개선 예산규모		438,813	334,698	223,962	93,424	171,567
전년 대비	증감액	104,115	110,736	130,538	△78,143	
	증감률	31.1	49.4	139.7	△45.5	

※ 2017년도 : 제2회 추경예산(안) 기준, 2013~2016년도 : 최종예산 기준

- 또한, 노후시설개선 예산 규모가 증가 추세에 있고, 현재 교육부에서는 교육시설기본법 제정을 통해 국가차원의 학교시설개선 종합계획⁷¹⁾을 수립할 예정⁷²⁾으로 노후시설개선에 대한 투자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71) 학교시설 안전관리 및 노후화·재난위험 학교시설 개선대책 등을 포함

72) 2017년 17개 시·도교육청 시설과장 회의자료(교육부, 2017.08.01.)

- 서울시교육청에서도 노후시설개선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응방안이 선제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노후시설개선의 추경 증액예산 1,270억 2,900만원은 모두 일반재원으로 단위사업별 증감 내역을 검토하면

〈표 4-21〉 노후시설개선 단위사업별 추경증감 내역

(단위 : 건, 백만원)

단위사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추경증감내역			
			증감액	재원구분		물량
				일반재원	구성비	
합 계	438,813	311,784	127,029	127,029	100.0	898
화장실개선(변기교체) ^{주1}	53,586 (16,103)	33,906 (7,577)	19,680 (8,526)	19,680	15.5	229 (184)
전기시설개선	17,098	2,608	14,490	14,490	11.4	187
냉난방개선	76,993	25,892	51,101	51,101	40.2	223
창호개선	29,122	28,496	626	626	0.5	2
외벽개선	22,597	21,871	726	726	0.6	5
소방시설개선	5,428	4,918	510	510	0.4	9
방수공사	14,941	13,359	1,582	1,582	1.2	14
바닥개선	13,761	13,761	0	0	0.0	0
도장공사	5,602	5,602	0	0	0.0	0
외부환경개선	9,576	9,358	218	218	0.2	4
기타사업(냉난방기화학세척) ^{주2}	90,016	86,752	3,264 (2,075)	3,264	2.6	20
장애인편의시설	17,028	10,322	6,706	6,706	5.3	61
안전관리	83,065	54,939	28,126	28,126	22.1	144

주1. 단위사업 '화장실개선(변기교체)'의 ()는 변기교체에 해당하는 숫자로 화장실개선 본수에 포함

주2. 단위사업 '기타사업(냉난방기화학세척)'의 ()는 냉난방기화학세척에 해당하는 숫자로 기타사업 본수에 포함

- **냉난방개선 및 전기시설개선**은 각각 511억 100만원, 144억 9,000만원이 증액되어 추정 증액분(1,270억 2,900만원)의 51.6%인 655억 9,100만원이 증액 편성된 바,
- 각급학교에 2004년도 이전 설치되어 내용연수⁷³⁾가 경과된 냉난방기 교체(전기공사 포함)를 통해 쾌적한 교실 환경을 조성하고자 증액된 것으로 확인됨
- 아울러, **기타사업**의 냉난방기 화학세척(20억 7,500만원)은 미세먼지 대책으로서 교실 내 적정온도⁷⁴⁾ 및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302개교의 25,941대⁷⁵⁾의 냉난방기를 세척⁷⁶⁾하고자 편성된 것으로 확인됨
- **안전관리**의 경우, 281억 2,600만원이 증액 편성⁷⁷⁾된 것으로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위험·유해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내진보강, 석면·샌드위치판넬 제거 및 우레탄 체육시설 교체 등을 실시하고자 증액 요청한 것임

73) 냉난방기 내용연수 : 9년(조달청고시 제2016-40호, 2016.12.13.)

74) 교육부에서는 여름철 학생안전관리 대책으로 학교별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정온도를 설정하여 냉방을 공급하도록 조치함(2017.07.11.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보고 보도참고자료 발췌)

75) 냉난방기 화학세척 대상

연 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대상학교수(대수)	302(25,941)	302(27,013)	300(24,903)	287(23,089)

76) 냉난방기 세척 주기(서울시교육청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2015.7.) p.239)

구 분	제거대상	방 법	권장 청소주기	비 고
필터청소	먼지	청소기, 물세척	연 2회 이상	학교자체 가능
화학세척	먼지, 곰팡이, 세균	고압세척, 약품투여	3~4년에 1회 이상	전문가 의뢰

77) 안전관리사업 세부 내역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내진보강	정밀점검	석면제거	샌드위치판넬제거	안전점검	우레탄교체*	계
물 량	3	16	24	26	3	72	144
편성액	10,680	1,104	9,081	3,947	257	3,057	28,126

* 우레탄교체 : 제1회추경에서 우선확정된 교육부 특별교부금(32억 200만원)에 대한 대응투자

- 특히, 안전관리사업 세부 내역 중 내진보강, 석면·샌드위치판넬 제거의 경우 금번 추경 편성으로 현재까지 전체 소요액(1조 674억 6,700만원)의 9.9%(1,052억 8,500만원)가 투자된 것으로 검토⁷⁸⁾되는 바, 전체 물량 해소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④ 지방교육채상환

- 지방교육채상환⁷⁹⁾ 편성액은 5,789억 1,600만원으로 기정예산(1,543억 9,300만원) 대비 275.0%, 4,245억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서 추경재원(6,567억 3,900만원)의 64.6%에 해당함

〈표 4-22〉 추가경정예산안 지방교육채상환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산	증 감 내 역				
			증 감 액	구 성 비 율 ⁷⁸⁾	증 감 륜	일반재원	우선확정
지방교육채상환	578,916	154,393	424,523	64.6	275.0	424,523	0
원 금 상 환	544,522	120,094	424,428	64.6	353.4	424,428	0
이 자 상 환	34,394	34,299	95	0.0	0.3	95	0

주1. 추경재원(6,567억 3,900만원)에 대한 구성비율임

78) 내진보강, 석면·샌드위치판넬 제거 투자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내진보강	석면제거	샌드위치판넬제거	계
소 요 액	715,410	328,300	23,757	1,067,467
투자실적	39,750	58,042	7,493	105,285
투 자 율	5.6	17.7	31.5	9.9

※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p.103 발췌 재구성

79) 사업별 설명자료 p.219

- 원금상환의 경우, 기정예산(1,200억 9,400만원)⁸⁰⁾은 당초 지방교육채 상환계획 및 교육부의 지방교육채 추가(조기) 상환 통보에 따라 편성된 것이나,
- 금번 추경은 교육부의 추가(조기) 상환 통보 없이 추경 세입 재원⁸¹⁾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지방교육채 상환계획을 변경하여 4,244억 2,800만원을 추가로 조기 상환⁸²⁾하려는 것임
- 서울시교육청의 자체적인 조기상환이 진행될 경우, 2018년도분 보통교부금 산정 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교육부령 제115호, 2017.1.9. 일부개정)」⁸³⁾에 따른 인센티브(106억원)⁸⁴⁾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나,
- 지방교육채 상환 재원인 서울시의 법정전입금 5,885억원 또한 반영되어 2018년도분 보통교부금은 △5,779억원⁸⁵⁾이 감소

80) 지방교육채 원금 상환 기정예산(1,200억 9,400만원)

구 분	본예산(a)	제1회 추경예산(b)	기정예산(c=a+b)
편 성 액	436억 9,400만원	764억원	1,200억 9,400만원
편성근거	당초 상환계획(차입기관과의 약정)	교육부 추가(조기) 상환 통보	

81) 법정전입금 5,885억원

82) 교육금고와의 약정에 따라 중도(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조기)상환수수료 없음

8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7조(산정공식 및 단위비용) ② 영 제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자체노력의 정도에 따른 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제5호

자체노력의 정도에 따른 재정수요액 산정을 위한 측정항목·측정단위·산정공식 및 단위비용

(제7조제2항 관련)

측정항목	측정단위	산정공식	단위비용
5. 지방채 조기상환 지원	지방채 조기상환액	교육·학예 사무 관련 지방채의 전년도 상환액 중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지방채 조기 상환액 × 2.5%	

부칙 제2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7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3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84) 4,244억 2,800만원×2.5%=106억 1,000만원

85) 기준재정수요 조기정산 인센티브 106억원 - 기준재정수입 법정전입금 5,885억원 = △5,779억원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2018년도 본예산 편성 시 재원 부족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검토됨

- **이자상환**은 지방채 원금 조기상환에 따른 추가 이자 납부를 위해 기정예산(342억 9,900만원) 보다 9,500만원 증액 편성(343억 9,400만원)된 것임

○ 금번 추경안을 반영한 2017년도말 지방교육채 잔액⁸⁶⁾은 2016년도말 (1조 5,656억 6,600만원) 보다 △34.8%, 5,445억 2,200만원 이 감소한 1조 211억 4,4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됨

〈표 4-23〉 지방교육채 2017년도말 (예정)잔액

(단위 : 백만원)

발행 연도	사업명	2016년말 잔액	2017년도 증감(예정)		2017년말 (예정)잔액	상환기간		상환방법
			발행(A)	상환(B)		최초	최종	
합 계		1,565,666	0	544,522	1,021,144			
2013	2013 학교신설	87,388	0	87,388	0	2016	2018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437억원)
2014	2014 학교신설	59,514	0	0	59,514	2020	2029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166억원)
	09년 공차기금인수 지방채 차환	182,629	0	182,629	0	2020	2029	
2015	교원명예퇴직	256,175	0	0	256,175	2020	2030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815억원)
	공립유치원신설 및 교육환경개선	268,763	0	0	268,763	2021	2030	

86) 연도별 지방교육채 잔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 도	2017	2016	2015	2014	2013	
지방채 잔액	1,021,144	1,565,666	1,188,295	373,226	311,222	
전년 대비	증감액	△544,522	377,371	815,069	62,004	-
	증감률	△34.8	31.8	218.3	19.9	-

(단위 : 백만원)

발행 연도	사업명	2016년말 잔액	2017년도 증감(예정)		2017년말 (예정)잔액	상환기간		상환방법
			발행(A)	상환(B)		최초	최종	
2015	교부금차액보전	137,722	0	122,095	15,627	2021	2030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815억원)
	2015 학교신설	152,410	0	152,410	0	2021	2030	
2016	교육환경개선	217,414	0	0	217,414	2022	2031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421억원)
	교부금차액보전	152,638	0	0	152,638	2022	2031	
	2016 학교신설	51,013	0	0	51,013	2022	2031	
2017	교육환경개선 (1,334억원승인)	0	0	0	0	2023	2032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133억원)

※ 2017년 교육환경개선으로 승인받은 1,334억원은 2018년도로 이월하여 발행 예정

○ 지방교육채에 대한 연도별 상환계획을 검토하면,

〈표 4-24〉 지방교육채 연도별 상환계획

(단위 : 백만원, %)

연도	원리금 상환액(C=A+B)		원금(A)	이자(B)	비 고
	전년대비 증감률	전년대비 증감률			
2018	24,662	-	0	24,662	
2019	26,383	7.0	0	26,383	
2020	45,144	71.1	18,761	26,383	2014년도 발행 원금상환 시작
2021	85,935	90.4	60,009	25,926	2015년도 발행 원금상환 추가
2022	126,616	47.3	102,116	24,500	2016년도 발행 원금상환 추가
2023	130,994	3.5	108,788	22,206	2017년도분(1,334억원) 2018년도 발행 원금상환 추가
2024	135,201	3.2	115,460	19,741	
2025	132,561	△2.0	115,460	17,101	
2026	129,924	△2.0	115,460	14,464	
2027	127,286	△2.0	115,460	11,826	

※ 2017년 교육환경개선으로 승인받은 1,334억원은 2018년도로 이월하여 발행 예정

- 2014년도 이후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조건은 모두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2019년도까지는 이자만 상환하고 2014년도에 발행된 지방채의 원금 상환이 시작되는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3년간은 원리금 상환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2025년도부터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 교육청이 보유한 지방교육채가 자체부담 없이 전액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으로 지원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보통교부금 총액 범위 내에서 상환될 수밖에 없어 상환 완료 시 까지 교육재정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판단됨

(2) 목적지정지원금(우선확정) 증액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회계연도 중 그 용도가 지정·교부된 목적지정지원금은 55건, 272억 9,300만원으로 전체 추정재원(6,567억 3,900만원)의 4.2%에 해당됨

〈표 4-25〉 목적지정지원금(우선확정) 자원 구분

(단위 : 건, 백만원)

재 원		건 수	우선확정액
합 계		55	27,293
중앙정부이전수입	국 고 보 조 금	2	1,415
	특 별 교 부 금	28	19,839
자치단체이전수입	광역자치단체전입금	7	2,413
	기초자치단체전입금	11	3,133
기 타 이 전 수 입	기 타 지 원 금	4	28
	전 입 금	3	465

- 목적지정 지원금 우선확정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45조⁸⁷⁾ 및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예산총칙 제9조⁸⁸⁾에 따라 동일 회계연도 내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하여 금번 추경에 의무적으로 반영된 것으로써, 증감 조정의 실효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됨

○ 우선확정사업⁸⁹⁾ 중 1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영어회화전문강사배치 외 7개 사업, 220억 1,800만원임

- **영어회화전문강사배치⁹⁰⁾**(중등교육과)는 중등 수준별 이동수업의 확대에 따라 증가된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영어회화전문강사(490명)에 대한 인건비 57억 1,200만원을 증액 요청하는 것임

- 동 사업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4:6 비율로 분담하는 사업으로 이미 2017년도 본예산에 교육청 분담분 104억 3,500만원을 반영한 바 있어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우선확정하여 이를 추경예산에 편성 요청한 것임

- **특성화고장학금지원⁹¹⁾**(진로직업교육과)은 2017년도 본예산에

87)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88)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예산총칙」 제9조 회계연도 중에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되는 교부금, 보조금, 전입금 등 목적지정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회계연도내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지정지원금이 교부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

89) 제1회 추경(2017.05.24.) 후 2017.07.31. 우선확정분까지 반영

90) 사업별 설명서 p.109

91) 사업별 설명서 p.176

교육부 특별교부금 분담금을 미리 반영하여 편성⁹²⁾하였으나 이후 분담비율이 조정⁹³⁾됨에 따라 추가 교부(47억 4,400만원)되어 우선확정한 바 이를 추경예산에 편성 요청한 것임

- **직업계고학생비중확대⁹⁴⁾**(진로직업교육과)는 국가시책사업인 직업계고 비중확대와 관련하여 추진되는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매직)프로그램 운영지원’ 등을 위하여 특별교부금 44억 9,000만원을 2차에 걸쳐 우선확정하고 추경예산에 편성 요청한 것임
- **특성화고취업역량강화⁹⁵⁾**(진로직업교육과)는 특성화고 취업률 제고를 위한 취업선도 학교 지원 및 취업지원센터 지원 등을 위하여 특별교부금 27억 3,300만원을 우선확정하고 추경예산에 편성 요청한 것임

〈표 4-26〉 목적지정지원금 중 우선확정 내역(10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연번	재 원	세 부 사 업	사 업 내 역	우선확정액
1	특별교부금	원어민교사및 보조강사배치	영어회화전문강사배치	5,712
2	특별교부금	특성화고장학금지원	특성화고장학금지원	4,744
3	특별교부금	특성화고교육 내실화지원	직업계고학생비중확대추진 (매직사업 1차 선정학교 지원 등)	2,970
4	특별교부금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	특성화고취업역량제고	2,733
5	기 초 자 치 단체전입금	학교시설증개축	관악초복합화	1,666
6	광 역 자 치 단체전입금	학교폭력예방지원	학교CCTV교체	1,535
7	특별교부금	특성화고교육 내실화지원	직업계고학생비중확대추진 (매직사업 2차 선정학교 지원)	1,520
8	국고보조금	학교체육활성화지원	초등스포츠강사지원	1,138

92) 2017년도 본예산 편성액 : 128억 1,300만원(교육부 특별교부금)

93) 특성화고장학금 분담비율 : 당초 3(교육부) : 7(교육청) → 변경 4(교육부) : 6(교육청)

94) 사업별 설명서 p.165

95) 사업별 설명서 p.183

(3) 세입 재원 없는 세출 예산 증액

- 금번 추경에 증액 편성 요청한 **평생교육기관 기타사업비** 등 6개 사업의 경우, 재원에 대한 세입 편성이 누락되거나 전년도 목적 지정지원금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변경사용이 불가능한 현액으로 관리될 재원일 뿐만 아니라 이미 2016회계연도 결산이 의결된 상태라는 점에서 편성 자체가 불가능한 예산으로 판단됨

〈표 4-27〉 세입 재원 없는 세출 예산 증액 내역

(단위 : 백만원)

주관부서	세부사업명	세부항목	추경액	증액사유
예산담당관	직속기관운영	평생교육기관기타사업비	48	수강료 예상 수입액 증가에 따른 강사료 증액 편성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환경개선	안전관리(우레탄교체)	118	2016년도 국고보조금 반납교 재편성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환경개선	이재민수용시설 지정학교내진보강	69	서울시지원금 집행잔액 반납금
정책안전기획관	학교폭력지원	녹색어머니회 운영	18	2016년도 특별교부금 집행잔액 편성
체육건강과	학교환경관리	학교석면고착화시범사업	3	서울시지원금 집행잔액 반납금
교육혁신과	ICT활용지원	SW교육선도학교운영	2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 **평생교육기관 기타사업비**⁹⁶⁾의 경우, 평생학습관 수강자 증가로 당초 편성된 강사료 부족분 발생이 예상되어 4,800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한 것이나

- 평생학습관 강사료의 경우, 수강 참여자가 납입하는 수강료를 재원으로 하여 지급됨이 원칙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수강료 수입에 대한 세입예산 편성 없이 세출예산의 강사비만 증액하여 편성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34조⁹⁷⁾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을 위반한 편성사례로 판단됨
- **안전관리(우레탄교체)** 등의 5개 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잔액 사용 및 반납을 위하여 2억 900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한 것이나
- 2016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⁹⁸⁾을 지난해 제1회 추경에서 이미 세입 조치 완료하여 제1회 추경의 세출 재원으로 활용한 바 있음
 - 따라서, 금번 추경에는 동 사업 목적을 위한 세입 재원이 없고, 이미 지난 회계연도 결산이 의결되어 불용처리된 집행잔액에 대해 변경사용하려는 것은 예산과 결산의 기본을 결여한 편성 사례로 증액 요청된 내용에 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안전관리(우레탄교체)**(1억 1,800만원), **SW교육선도 학교운영**(2,000만원), **학교석면고착화시범사업**(3,000만원) 및 **이재민수용시설지정학교내진보강**(6,900만원) 사업의 경우,

97)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98) 순세계잉여금 = 결산상잉여금 - 다음연도이월액 - 보조금집행잔액 - 지방채상환액

교육비특별회계와 학교회계 간의 회계연도 불일치⁹⁹⁾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례로 판단되어 향후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나. 세출예산 감액 관련

- **방과후자유수강권운영¹⁰⁰⁾ · 수익자부담경비지원¹⁰¹⁾(참여협력담당관), 초·중학교교과용도서¹⁰²⁾(교육혁신과) 및 평생교육시설지원¹⁰³⁾(평생교육과)의 4개 사업은 지원 대상자 감소에 따라 기정예산(1,013억원) 대비 △7.4%, △75억 4,500만원을 감액한 937억 5,500만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한 바,**

〈표 4-28〉 방과후자유수강권운영 등 4개 사업 추경 증감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추경증감 (A-B)	감 액 사 유
합 계	93,755	101,300	△7,545	
방과후자유 수강권운영	24,884	25,830	△946	지원대상 △3,301명 감소 (95,663명→92,632명)
수익자부담 경비지원	8,249	10,671	△2,422	지원대상 △6,576명 감소 (47,865명→41,289명)
초·중학교 교과용도서	51,776	55,039	△3,263	지원대상 △9,543명 및 지원단가 (초△890원, 중△9,580원) 감소
평생교육 시설지원	8,846	9,760	△914	지원대상 △457명 감소 (6,780명→6,323명)

99) 교육비특별회계 회계연도 : 1.1.~12.31.
학교회계 회계연도 : 3.1.~다음해 2월말

100) 사업별 설명자료 p.39

101) 사업별 설명자료 p.41

102) 사업별 설명자료 p.61

103) 사업별 설명자료 p.132

- 한정적인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발생 가능한 불용액을 회계연도 중 미리 감액 조정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됨
 - 다만, 당초 예산편성 단계에서 필요 소요액 추계의 오류를 추경을 통하여 희석시키는 사례일 수 있는 바, 향후 예산편성 시 적정규모가 산출될 수 있도록 대상 인원 등의 추계에 대한 정밀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특히, **초·중학교교과용도서**를 포함하고 있는 **교과서지원** 세부사업의 경우 2회계연도 연속 50억원 이상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¹⁰⁴⁾한 사업이기에 예산 편성과과정에서 보다 정밀한 예산 추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공기정화장치연구용역**¹⁰⁵⁾ 사업은 교육청 자체적으로 공기정화장치에 대한 효과성 검증 및 공기정화방법 기준안 마련 등을 위하여 편성하였으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에 기재¹⁰⁶⁾한 바와 같이 정부 추경과 중복 편성된 부분에 대하여 △1억 8,000만원 감액 요청한 것임

〈표 4-29〉 공기정화장치연구용역 추경 증감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내역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추경증감 (A-B)	감액사유
공기정화장치연구용역	20	200	△180	교육부 사업과 중복되는 연구용역비 감액

104)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p.27, p.36

- 2016회계연도 불용액 : 57억 9,900만원 / 2015회계연도 불용액 : 240억 8,400만원

105) 사업별 설명자료 p.199

106)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p.29

다. 성인지예산서 및 성과계획서 관련

- **성인지 예산서**는 「지방재정법」 제44조의2(107)에 따라 예산안 제출 시 첨부되어야 하고, **성과계획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108) 및 제44조의2에 따라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포함시켜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109)에도 예산안 제출 시 성과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음
- 그러나,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의 단서조항(110)에 따라 수정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성과계획서 및 성인지예산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성인지 예산서와 성과계획서**를 생략한 것으로 판단됨

-
- 107)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 6. 생략
 7. 성인지 예산서
 8. 성과계획서
 9. ~ 14. 생략
- 108)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109)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성과중심의 재정운용) ① 시·도 교육감이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과 목표
 2. 성과 목표의 관리 체계
 3. 성과 평가와 그 지표
 4. 성과 평가결과의 반영
 5. 그 밖에 성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시·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시·도 교육감은 지방의회에 예산안과 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110)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IV. 질의토론 요지 : 생략

V. 심사결과

- 일 자 : 2017. 9. 5.(화) (제2차 예결특위)
- 심사결과 : 수정동의안 발의 및 가결
- 수정내용 : 별 첨

VI.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VII. 시정요구사항 : 없음

◇ 첨 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의결 결과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033
----------	------------

2017년 9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수정 이유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2. 수정 주요 내용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별첨 수정안과 같이 수정·의결한다.

◇ 첨부 :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
 (2017. 9. 5.)

□ 총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안	예결위 심사·의결내역	증감금액
세 입	9,440,867,649	9,440,867,649	0
세 출	9,440,867,649	9,440,867,649	0

□ 세출감액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안	심사·의결액	감액금액	비 고
학 교 신 증 설	104,117,188	103,347,188	△770,000	○ 양원초 - 학교신설
학 교 시 설 증 개 축	111,520,108	102,739,176	△8,780,932	○ 신화초 - 강당결체육관 시설비 외 11건
학 교 시 설 교 육 환 경 개 선	438,813,112	438,568,827	△244,285	○ 무학여고 - 석면텍스 전면 교체
학 교 급 식 환 경 개 선	62,325,658	58,431,370	△3,894,288	○ 신화초 - 급식실및학생식당신증축 외 3건
합 계	716,776,066	703,086,561	△13,689,505	

□ 세출증액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안	심사·의결액	증액금액	비 고
특 색 교 육 과 정 운 영	72,104,181	72,134,181	30,000	o 풍문고 가례재현행사
학 교 환 경 위 생 관 리	2,336,054	2,357,254	21,200	o 홍은초 공기정화기 구입 외 1건
학 교 신 증 설	104,117,188	104,935,188	818,000	o 상경초병설유 교실증축 외 3건
학 교 시 설 교 육 환 경 개 선	438,813,112	451,407,057	12,593,945	o 경기기계공고 실습동 옥상방수 외 254건
학 교 급 식 환 경 개 선	62,325,658	62,552,018	226,360	o 상천초 조리실 오븐기 설치 외 8건
합 계	679,696,193	693,385,698	13,689,505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감액 내역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항목별 예산안	감액	사 업 내 역
1	교육시설안전과	학 교 시 설 증 개 축	111,520,108	△1,332,787	0 신화초 - 강당겸체육관 시설비
2	교육시설안전과	학 교 시 설 증 개 축	111,520,108	△30,000	0 신화초 - 강당겸체육관 내부비품비
3	체 육 건 강 과	학 교 급 식 환 경 개 선	62,325,658	△1,300,000	0 신화초 - 급식실및학생식당신증축
4	교육시설안전과	학 교 시 설 증 개 축	111,520,108	△1,332,787	0 대현초 - 강당겸체육관 시설비
5	교육시설안전과	학 교 시 설 증 개 축	111,520,108	△30,000	0 대현초 - 강당겸체육관 내부비품비
6	체 육 건 강 과	학 교 급 식 환 경 개 선	62,325,658	△59,288	0 대현초 - 급식실및학생식당신증축 설계비
7	교육시설안전과	학 교 시 설 증 개 축	111,520,108	△2,415,358	0 방일초 - 강당겸체육관 시설비
8	교육시설안전과	학 교 시 설 증 개 축	111,520,108	△30,000	0 방일초 - 강당겸체육관 내부비품비
9	체 육 건 강 과	학 교 급 식 환 경 개 선	62,325,658	△1,300,000	0 방일초 - 급식실및학생식당신증축
10	교육시설안전과	학 교 시 설 증 개 축	111,520,108	△1,332,787	0 압구정초 - 강당겸체육관 시설비
11	교육시설안전과	학 교 시 설 증 개 축	111,520,108	△30,000	0 압구정초 - 강당겸체육관 내부비품비
12	체 육 건 강 과	학 교 급 식 환 경 개 선	62,325,658	△1,235,000	0 압구정초 - 급식실및학생식당신증축
13	학 교 지 원 과	학 교 신 증 설	104,117,188	△770,000	0 양원초 - 학교신설
14	교육시설안전과	학 교 시 설 증 개 축	111,520,108	△100,000	0 도곡중 - 강당겸체육관 설계비
15	교육시설안전과	학 교 시 설 증 개 축	111,520,108	△10,000	0 도곡중 - 강당겸체육관 설계보상비
16	교육시설안전과	학 교 시 설 증 개 축	111,520,108	△2,107,213	0 도곡중 - 강당겸체육관 시설비
17	교육시설안전과	학 교 시 설 증 개 축	111,520,108	△30,000	0 도곡중 - 강당겸체육관 내부비품비
18	교육시설안전과	학 교 시 설 교 육 환 경 개 선	438,813,112	△244,285	0 무학여고 - 석면텍스 전면 교체
19				0	-
합계			2,130,474,228	△13,689,505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내역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증액	사업내역
1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50,000	○ 경기기계공고 실습동 옥상방수
2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45,000	○ 상계고 영상시설 개선
3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29,101	○ 대진여고 실내체육교실 환경개선
4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30,000	○ 용화여고 외부창호 개선
5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5,000	○ 불암중 체육관 조도개선
6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5,000	○ 용동초 체육관 조도개선
7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5,000	○ 신상중 체육관 조도개선
8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50,000	○ 재현고 정보관 옥상방수
9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30,000	○ 재현중 교실환경개선
10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20,000	○ 금양초 본관 우측면 경사로 계단 설치
11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5,000	○ 수락초 특수학급 교실환경개선
12	체육건강과	학교급식환경개선	35,000	○ 상천초 조리실 오븐기 설치
13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00,000	○ 상명중 야외 학생 휴게실 설치
14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20,000	○ 청계초 교사 내부도장
15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30,000	○ 중평중 체육관동 환경개선
16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50,000	○ 영서중 통학로 개선
17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20,000	○ 구로중 관리실 및 특별교실 환경개선
18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20,000	○ 구로중 차양막 설치 및 음수대 보수
19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0,000	○ 구로중 주차장 정비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중액	사업내역
20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50,000	○ 동구로초 지하교실 및 소강당 환경 개선
21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50,000	○ 영서초 창고 리모델링
22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50,000	○ 대명초 방송실 개선
23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00,000	○ 정릉초 교실 및 교사동 환경개선
24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50,000	○ 동산정보산업고 식당환경개선
25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20,000	○ 화계초 신관 돌봄교실 방수
26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20,000	○ 화계초 방과후 강사실 보수
27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40,000	○ 화계초 학교 정문 아스콘 포장
28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20,000	○ 화계초 과학실 현대화
29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45,000	○ 번동중 학내 유선망 랜공사
30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35,000	○ 번동중 교실 조도개선
31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3,000	○ 번동초 건물 옥상 및 연결통로 방수
32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7,000	○ 번동초 소방시설 개선
33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60,000	○ 월촌중 특별교실 환경개선
34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56,700	○ 경인초 교실환경개선
35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43,100	○ 신목중 컴퓨터실 등 환경개선
36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40,200	○ 월촌초 교실환경개선
37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42,000	○ 경기기계공고 다목적소규모잔디구장 조성
38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7,000	○ 미양고 제2체육관 벽체보수 및 사인공사
39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30,000	○ 창도초 운동장스탠드 개선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중액	사업내역
40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5,000	○ 방학중 운동장 배수로 공사
41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95,728	○ 재현고 축구장 조도개선
42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54,560	○ 동작고 컴퓨터 교실 현대화
43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40,000	○ 남성중 통학로 개선
44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55,440	○ 상도중 교실환경개선
45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50,000	○ 신남성초 방송시설 연계장비 개선
46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60,000	○ 성산중 교실환경개선
47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40,000	○ 성산중 음악실 환경개선
48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75,000	○ 승문중 본관 1층 화장실 환경개선
49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25,000	○ 공덕초 신관 교실출입문 교체
50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50,000	○ 상일초 방송실 개선
51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30,000	○ 한산초 운동장 개선
52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35,000	○ 한산초 놀이시설 개선
53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45,000	○ 강솔초 놀이터 구축
54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20,000	○ 서울컨벤션고 체육실확충
55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20,000	○ 강명초 놀이시설 환경개선
56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40,000	○ 미성초 교실환경개선
57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70,000	○ 조원초 교내환경개선
58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45,000	○ 염광중 화장실 환경개선
59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45,000	○ 정보고 교실환경개선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중액	사업내역
60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70,000	○ 세일중 운동장 환경개선
61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30,000	○ 정심초 체육관 연결통로 창호 공사
62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00,000	○ 도성초 신관 도서관 환경개선
63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60,000	○ 언주초 스탠드 차양 설치 및 개선
64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20,000	○ 금옥여고 체육관 환경개선
65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20,000	○ 홍익디자인고 방충망공사
66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7,390	○ 인왕초 공기순환기 구입
67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8,140	○ 흥은초 공기순환기 구입
68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1,726	○ 흥은초 등나무 벤치 및 담장 개선
69	체육건강과	학교환경위생관리	10,600	○ 흥은초 공기정화기 구입
70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21,500	○ 흥제초 과학실험실 환경개선
71	체육건강과	학교환경위생관리	10,600	○ 흥제초 공기정화기 구입
72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8,510	○ 명지중 공기순환기 구입
73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0,000	○ 인왕중 교실환경개선
74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6,650	○ 인왕중 공기순환기 구입
75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1,100	○ 정원여중 공기순환기 구입
76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5,000	○ 정원여중 운동장 음수대 교체
77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5,000	○ 흥은중 학내망 정비
78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2,395	○ 흥은중 공기순환기 구입
79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32,560	○ 명지고 공기순환기 구입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중액	사업내역
80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20,000	○ 고은초 어린이놀이시설바닥및노후키편시설교체
81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25,000	○ 신연중 체육관지붕교체
82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77,000	○ 연북중 방송시스템개선
83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57,000	○ 서연중 교실환경개선
84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35,000	○ 가재울고 과학실환경개선
85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32,000	○ 인창고 창호안전바설치
86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80,000	○ 한성고 도서관환경개선
87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40,000	○ 흥연초 테니스장개선
88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0,000	○ 연희초 CCTV교체
89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0,000	○ 연희초 강당방송시설교체
90	체육건강과	학교급식환경개선	7,000	○ 연희초 노후급식비품교체
91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00,000	○ 개명초 도서실환경개선
92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00,000	○ 개명초 실과실및보건실환경개선및통학로개선
93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371,000	○ 성수공고 냉난방개선
94	학교지원과	학교신증설	335,000	○ 상경초병설유 교실증축
95	학교지원과	학교신증설	342,000	○ 동일초병설유 교실증축
96	학교지원과	학교신증설	93,000	○ 상곡초병설유 교실증축
97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50,000	○ 전농중 공기정화 및 조도개선
98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00,800	○ 배명고 박애관칸막이개선
99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0,000	○ 금천고 학교진입로포장공사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중액	사업내역
100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28,000	○ 동일중 비상계단의부창호설치공사
101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2,000	○ 동일중 건축폐기물처리
102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30,000	○ 정심초 캐노피설치
103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50,000	○ 동대부여중 방송시설개선
104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50,000	○ 구의초 다목적실설치공사
105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200,000	○ 연가초 체육관,급식실및교실증축설계비
106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60,000	○ 선유중 교육환경개선
107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60,000	○ 용담초 컴퓨터실환경개선
108	학교지원과	학교신증설	48,000	○ 성일초 교실증축설계비
109	체육건강과	학교급식환경개선	20,360	○ 구암중 급식실조리기구교체
110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28,350	○ 봉원중 교실환경개선
111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43,500	○ 봉원중 특별실환경개선
112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32,100	○ 인현중 교실환경개선
113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40,000	○ 미동초 시청각실(다목적실)리모델링
114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250,000	○ 북성초 옥상공원화
115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247,000	○ 배재중 음향시스템개선
116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23,000	○ 천호중 축구부야간훈련시설및위클래스개선
117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30,000	○ 천일중 관리실환경개선
118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50,000	○ 한산중 방송시설및인터넷망설치
119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50,000	○ 한산중 정보동과본관연결통로보수공사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중액	사업내역
120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40,000	○ 강동고 교실환경개선
121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41,775	○ 둔촌고 간이골프연습장설치
122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44,340	○ 서서울생활과학고 강당환경개선
123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50,000	○ 용산고 교육환경개선
124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90,500	○ 동대부고 자기주도학습실증축추가
125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50,000	○ 진선여고 방송시설개선
126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48,000	○ 구로초 교실환경개선
127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75,000	○ 신도림초 교실환경개선
128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25,000	○ 신도림초 방충망, 추락방지대설치 및 운동장 비상벨 설치
129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49,800	○ 미래초 방송실환경개선
130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21,000	○ 연희중 연결통로지붕설치
131	체육건강과	학교급식환경개선	3,000	○ 연희중 노후급식비품교체
132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0,000	○ 가재울고 체력단련실 환경개선
133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20,000	○ 가재울고 체육관환기시설개선
134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37,000	○ 가재울초 체험형친환경도시농업환경조성
135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20,000	○ 당서초 복도바닥보수공사
136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20,000	○ 위례별초 비올라창설치
137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40,000	○ 오현초 운동장배수로개선
138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60,000	○ 송중초 학교현관, 출입구개선 및 기타공사
139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50,000	○ 언남중 교구확충및보건실현대화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중액	사업내역
140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20,000	○ 영동중 운동장스탠드가림막설치
141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0,000	○ 영동중 냉온수배관개선
142	체육건강과	학교급식환경개선	20,000	○ 영동중 학생식당식기세척기교체
143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60,000	○ 서초초 스탠드그늘막설치
144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40,000	○ 면남초 멀티미디어실환경개선
145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5,000	○ 개운초 과학실및음악실환경개선
146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25,000	○ 개운중 체육관냉난방개선
147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7,000	○ 송례초 음악실환경개선및교육활동안내전광판설치
148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20,000	○ 일신초 운동장개선
149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3,000	○ 종암중 경비실설치
150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20,000	○ 송곡초 활동공간친환경도색공사
151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0,000	○ 송곡중 옥상방수공사
152	체육건강과	학교급식환경개선	10,000	○ 송곡중 급식실취반기교체
153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30,000	○ 월곡중 정문및후문배수로개선
154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20,000	○ 장위중 컴퓨터실환경개선
155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20,000	○ 서울시과학교 운동장마사토교체
156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0,000	○ 무학여고 본관동계단개선공사
157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30,000	○ 덕수고 교실환경개선
158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36,000	○ 행현초 교실환경개선
159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9,000	○ 무학초 교실환경개선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중액	사업내역
160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1,000	○ 무학초 시청각실음악실바닥교체
161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62,000	○ 도선고 자율학습실설치
162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32,000	○ 행당초 갤러리 환경개선
163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90,000	○ 용마초 컴퓨터실 및 과학실 환경개선
164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10,000	○ 중마초 관리실현대화 및 교직원식당설치
165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56,000	○ 성산초 느티관건물주변환경개선
166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20,000	○ 중화고 학생식당캐노피설치
167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77,000	○ 선덕중 본관동서측옥상방수공사
168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22,000	○ 서울여고 운동장배수로보수공사
169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65,000	○ 도봉초 정문교체및기타사업
170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78,000	○ 송곡여중 석면텍스제거및분전반교체
171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2,000	○ 송곡여중 신발먼지 흡입매트 설치
172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8,000	○ 송곡고 신발먼지 흡입매트 설치
173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36,000	○ 신현초 방송시설개선
174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56,000	○ 신현초 교사용화장실및관리실개선
175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20,000	○ 증산초 본관건물외벽보수
176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6,000	○ 증산중 별관등 외부도장
177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24,000	○ 수색초 조리실및소체육관냉난방기설치
178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35,000	○ 증산초 교실환경개선
179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05,000	○ 상신중 교실환경개선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중액	사업내역
180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20,000	○ 영중초 시청각실 환경개선
181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80,000	○ 오류남초 운동장 등 외부환경개선
182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50,000	○ 휘경중 교실환경개선
183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50,000	○ 군자초 교실환경개선
184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90,000	○ 자운고 교실환경개선
185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0,000	○ 송인중 교실환경개선
186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70,000	○ 문창중 다목적구장설치
187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80,000	○ 서울공고 방음벽설치
188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50,000	○ 대림초 교사동출입문및창호교체
189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00,000	○ 녹천중 특별활동교실조성
190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50,000	○ 한국삼육학교 중연창개선
191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20,000	○ 공연초 운동장캐노피설치
192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30,000	○ 공릉초 교실환경개선
193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50,000	○ 성내초 통학로개선
194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50,000	○ 성일초 교실환경개선
195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25,130	○ 구암중 교실환경개선
196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84,870	○ 구암고 운동장환경개선
197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90,000	○ 인현고 교실환경개선
198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40,000	○ 면목고 본관동방수및학생동조경
199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25,000	○ 중곡초 교실환경개선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중액	사업내역
200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58,000	○ 중화중 체육관및특별실등 환경개선
201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50,000	○ 면중초 학교숲놀이터조성및교무·행정공간개선
202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27,000	○ 면북초 교실환경개선
203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00,000	○ 강서초 학교도서실(도래샘)리모델링
204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00,000	○ 신월중 교실환경개선
205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09,000	○ 홍대부여고 학생식당통로비가림막설치공사
206	체육건강과	학교급식환경개선	51,000	○ 성산초 급식조리기구교체
207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40,000	○ 대신중 교무실환경개선
208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40,000	○ 동성중 교실환경개선
209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28,000	○ 배화여중 체육관냉난방개선
210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30,000	○ 상명대부여중 지하실방수및바닥타일공사
211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32,000	○ 중앙중 도서관환경개선
212	교육혁신과	문화예술교육활성화	30,000	○ 풍문고 가례재현행사
213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00,000	○ 삼선초 스탠드캐노피설치
214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20,000	○ 경동고 역사관조성
215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60,000	○ 홍대부중 교내도시가스배관설치
216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20,000	○ 성북초 도서실환경개선
217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80,000	○ 배명고 옥상방수
218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60,000	○ 삼육고 옥상방수
219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60,000	○ 한국삼육학교 옥상방수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중액	사업내역
220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66,000	○ 영원초 교실환경개선
221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67,000	○ 대영고 청람제에어컨교체및화장실칸막이공사
222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32,000	○ 대영중 교실환경개선
223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35,000	○ 염광중 미술실환경개선
224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50,000	○ 송례초 과학실환경개선
225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30,000	○ 송례중 체육관환경개선
226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40,000	○ 영풍초 방송실환경개선
227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40,000	○ 마천초 교실환경개선
228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40,000	○ 남천초 교내전선관리및보안관실후문교체
229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00,000	○ 금천문화예술정보학교 농구장설치
230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00,000	○ 문일고 강당환경개선
231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80,000	○ 삼릉초 교실환경개선
232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55,000	○ 언주중 방송장비교체
233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50,000	○ 도곡중 컴퓨터실설치
234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5,000	○ 도성초 도서관정비
235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200,000	○ 신동중 문화회관냉난방개선
236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50,000	○ 개포고 교실환경개선
237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60,000	○ 포이초 실과실환경개선
238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20,000	○ 개일초 화단노후펜스교체보수
239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50,000	○ 서일중 운동장침수개선(마사토)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중액	사업내역
240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20,000	○ 언남초 체육시설개선
241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55,000	○ 상일여고 창의융합실환경개선
242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30,000	○ 명원초 교실환경개선
243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35,000	○ 탑산초 과학실환경개선
244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80,000	○ 성재중 교실및체육관환경개선
245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30,000	○ 수송중 체육관음향시설및환경개선
246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58,000	○ 수송초 옥상녹화및편의시설
247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30,000	○ 백운초 교실내부도장(교실복도및내부)
248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50,000	○ 금양초 교문재설치및주변재포장
249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32,000	○ 당산초 교실환경개선
250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48,000	○ 경일고 테니스장조명공사
251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55,000	○ 용강중 내부도장공사
252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0,000	○ 경일초 체육관농구대설치
253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0,000	○ 성수중 체육관농구대교체
254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0,000	○ 경수중 컴퓨터실환경개선
255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20,000	○ 성수공고 출입문개선사업
256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20,000	○ 경수중 학생휴게공간설치
257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27,000	○ 경일고 컴퓨터실및교과교실환경개선
258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45,000	○ 잠실초 복도및계단도장공사
259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30,000	○ 잠현초 보건실외3개실이중창설치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중액	사업내역
260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35,000	○ 잠동초 교실내부도장
261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30,000	○ 잠실중 교실환경개선
262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30,000	○ 풍납중 학생탁구수업장개보수
263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30,000	○ 풍성중 구내방송장치설치공사
264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20,000	○ 공항중 노후보일러교체
265	체육건강과	학교급식환경개선	30,000	○ 마곡유 급식실 바닥공사
266	체육건강과	학교급식환경개선	50,000	○ 공항초 급식시설기구
267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85,200	○ 대일고 교육환경개선
268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21,780	○ 덕원여고 자기주도학습실환경개선
269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10,000	○ 신곡초 담장벽화
270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30,000	○ 당중초 교실환경개선
271	교육시설안전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50,000	○ 염동초 화장실 리모델링(용도변경)
합 계			13,689,505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변경 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주관부서	세부사업	예산액	구분(조정액)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1	교육시설안전과	직속기관시설관리	40,000	40,000	○ 직속기관시설관리 (시설관리본부 40,000천원)	○ 직속기관시설관리 (학생교육원 40,000천원)	재원배분 기관변경
합 계			40,000	40,000			